

債權管理의 實際(II)

李 摸 哲

〈中小企協中央會 相談課長〉

五. 債權의 強制的 回收

債權을 任意의 手段에 依해 回收하는 것이 理想의 い기는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債權者는 부득이 法律에 依한 강제적 수단을 利用해 서라도 回收 하는 도리 밖에 없으니 이것이 곧 강제회수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I. 執行保全節次

債權을 強制回收하기 위하여는 法에 依한 強制執行을 하여야 하는데 強制執行을 보다 確實하게 하기 위하여는 그 前段階인 執行保全節次를 賦아야 한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이러한 집행보전절차에 關하여 假押留와 假處分을 規定하고 있다. 卽 強制執行을着手하려면 債務名義(勝訴判決의 正本)가 있어야 하고 辯濟期日이 到來하여야 하는데 자칫하면 強制執行의 對象인 目的物이 債務者の 法律上 또는 實事實上 處分에 依해 變動될 念慮가 있으므로 이러한 不安定의 狀態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措置로 가압류·가처분에 關한 규정을 두어 本執行의 實効를 達成코자 하는 것이 바로 執行保全節次의 취지라 하겠다.

가. 假押留

가압류란 賣買代金, 貸與金, 어음金, 損害賠償債權等의 金錢債權이나 金錢으로 換算할 수 있는 債權의 執行을 保全하기 위해 執行의 對象이 되는 債務者の 一般財產을 現狀그대로 維持하여 두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保全處分을 말한다. 實務적으로는 對象目的物의 種類에 따라 不動產假押留, 債權假押留, 有體動產假押留로 區分하며 假押留의 目的物은 債務者の 一般財產(責任財產)에 屬하는 動產, 不動產, 債權, 其他의 財產權으로서 換價할 수 있는 모든 財產을 포함한다. 假押留가 假處分과 다른 点은 前者가 金錢債權의 執行保全을 目的으로 하는 것임에 反하여 后者は 金錢債權以外의 請求權의 執行保全을 目的으로 하는데 그 差異가 있다. 登記歟는 不動產도 假押留의 對象이 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債務者の 所有임을 立證하는 證書, 例컨데, 土地 또는 家屋台帳謄本, 建築確認書, 土地賣買契書等이 있어야 한다. 債務者が 占有하는 有體動產은 일단 債務者の 所有로 看做하여 押留할 수 있으나 民訴法 第532條에서 규정하는 動產은 押留禁止物이므로 注意를 要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債權 其他의 財產權이란 賣買代金, 貸與金, 都給代金, 貸料, 紙料, 退職金 및 各

種의 供托金等을 뜻한다.

나. 假處分

假處分이란 特定의 目的物에 關한 給付請求權의 執行을 保全하기 위함 또는 爭議中인 權利나 權利關係에 對한 現在의 危險을 피하기 위한 處分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후 賣渡人이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않는 경우 買受人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保全하기 위해當該不動產에 對한 處分禁止의 假處分申請을 하거나 또는 建物等의 明渡請求訴訟에 있어서 당해건물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轉貸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占有移轉禁止假處分을 申請하는 것 等을 말한다. 따라서 債權者가 이미 債務名義를 얻어 卽時 強制執行을 着手할 수 있는 경우에는 假處分申請(命令)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II. 督促節次와 提訴前和解

가. 督促節次

督促節次란 金錢 기타 代替物 또는 有價證券의 一定한 數量(金額)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 債務者의 申請만으로 債務者를 심리하지 않은채 一方의 書類審理만을 거쳐 債務者에게 支給命令을 送達하여 債務者가 이에 對해 2週日 以內에 異議申請이 없으면 法院이 支給命令에 確定力 및 執行力を 부여하는 特別訴訟節次이다. 이러한 簡易督促節次는 私權을 保護하려는 履行의 訴의 代用節次로서 널리 利用되고 있다. 支給命令에 對하여 債務者の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을 取下하거나 또는 却下를 決定한 때에는 支給命令이 確定되어 強制執行을 行使할 수 있는 債務名義가 된다 (民訴 § 519III)

勿論 債務者の 財產에 強制執行을 實施하면 債務名義에 基한 執行文을 부여 받아야 한다.(民訴 § 521 ①)

나. 提訴前 和解

提訴前 和解는 假登記擔保制度와 함께 私金

融業者에 依해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는 것으로서 民事訴訟의 目的이 되는 紛爭에 關하여當事者 雙方이 相對方의 보통재판 관할적의地方法院에 出席하여 訴를 提起함이 없이 行하는 和解를 말하는데 이는 民事訴訟에 比하여 節次가 간편하고 보통 1個月 以內에 마칠 수 있으며 印紙도 訴狀에 첨부하는 것의 半額 밖에 되지 않아 時間과 費用을 節約할 수 있다. 이러한 和解가 成立되고 그 內容이 調書에 記載되면 확정판결과 同一한 效力を 갖게되어 訴訟上의 和解나 다툼이 없다.(民訴 § 206)

六. 強制執行

I. 意義

強制執行이란 私人の 申請에 依해 國家機關이 債務名義에 表示된 債務者의 私法上の 給與義務에 對應하는 給與(給付)請求權을 國家(公) 權力으로써 實現하는 節次를 말한다. 債務者の 全財產에 對하여 총괄적으로 行하여지는 것을 一般執行이라 하고 個個의 財產에 對하여 個別으로 行하여지는 것을 個別執行이라 하는데 現行法上 一般執行은 破產執行의 경우에만 該當되고 通常의 強制執行은 모두 個別執行이다. 強制執行은 債務者를 強制하여 그 義務의 內容인 給與(給付)를 實施도록 하는 만큼 그 實現의 對象은 결국 債務者에게 歸屬되는 財產 또는 그 支配下에 있는 物件이므로 金錢債權이나 物件의 給與,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作爲 또는 不作爲를 求하는 對替執行이나 間接執行에 있어서도 債務者の 財產으로 充當해야 하는 것인 만큼 어느 경우에나 強制執行의 對象은 債務者の 財產이라고 할 수 있다.

II. 強制執行의 要件

強制執行의 要件으로는 먼저 執行請求權의前提가 되는 債務名義가 있어야하고 執行請求

權行使의前提가 되는 執行力 있는 正本(執行文)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債務名義, 執行文 및 證明書等의 送達, 履行時日의 到來, 担保提供의 證明書 提出等이 있다. 債務名義란 一定한 私法上의 約定權의 存在가 表示되고 또한 強制執行에 依해 그請求權을 實現할 수 있는 執行力이 認定된 公正證書를 말하며 執行名義라 하기도 한다. 債務名義가 되는 것은 主로 裁判 및 裁判에 準하는 效力を 가진 調書(和解, 調停調書等)이나 法院의 관여없이 公證人 또는 簡易節次에 依한 民事紛爭事件處理 特例法에 따른 合同法律事務所가 當事者의 진술을 根據로 作成한 公正證書도 여기에 包含된다. 強制執行을 實行하기 위하여는 執行力 있는 正本이 있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簡易이와 迅速을 要하는 것인 만큼 執行文 없는 債務名義로도 強制執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假押留 假處分命令
- ②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와 同一한 效力を 가진 過怠料의 裁判
- ③ 財產刑等의 執行을 위한 檢事의 執行命令
- ④ 不動產 引渡命令 等

III. 金錢債權에 對한 強制執行

金錢債權에 關한 強制執行은 債務名義의 内容이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權인 경우 그 債務名義의 内容을 實現하기 위해 債務者財產을 強制的으로 換價하여 그賣得金으로 債務辨濟에 充當하는 것이다. 債務名義의 内容이 金錢債權이기만 하면 外國通貨도 強制執行의 對象이 되나 特定貨幣의 約定權으로 하는 경우는 特定物의 引渡請求로 보아 金錢債權의 強制執行對象으로 되지는 않는다. 金錢債權을 추심하는 경우 執行의 目的物(對象物)은 原則적으로 債務者의 總財產이나 執行을 할 때에는 目的物의 具體的인 指定이 必要하다. 動產(有體動產과 債權 其他的財產權으로 區別), 不動產, 船舶, 自動車(重

機)中 하나 또는 두개 以上을 同時에 또는 順次的으로 指定하여 執行을 申請하여야 한다. 그러나 執行法上의 動產은 民法上의 動產이 不動產以外의 物件을 動產으로 規定(民法 § 99 ②)하는 것에 比하여 不動產 뿐만 아니라 船舶, 自動車(重機)以外의 物件 또는 財產權을 動產으로 보아 多少 動產의 範圍를 縮少하고 있으며 그러나 한편 著作權, 特許權도 動產으로 보는 点이 民法上의 動產範圍와 다르다.

IV. 財產明示 및 債務不履行者 名簿登載 制度

가. 財產關係의 明示制度

債務者가 確定判決等 債務名義에 依한 金錢支給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強制執行을 開始한 債權者가 一審法院에 申請하거나 또는 支給命令이나 調停을 한法院의 單獨判事가 財產關係의 明示를 命하였음에도 債務者가 이를 履行치 아니하면 刑事上處罰을 하도록 하는 것이 財產關係의 明示制度이다. 申請權者는 確定判決, 和解, 認諾, 民事調停調書, 確定된 支給命令等의 債務名義를 갖는 者로서 財產明示申請은 第一審法院 또는 支給命令이나 調停을 한法院의 單獨判事가 管轄하여 申請이 理由가 있으면 決定으로써 債務者에게 財產關係를 明示한 財產目錄의 提出을 命하고 同申請이 理由 없거나 債務者의 財產發見이 容易한 것으로 認定할 만한 明白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棄却할 수 있다. 申請權者는 이러한 棄却決定에 對하여 即時抗告할 수 있으며 反對로 債務者도 財產關係明示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 異議申請이 棄却된 경우 即時抗告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執行의 效力이 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債務者에 對하여 強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는 債務者는 債務者의 財產目錄의 열람 또는 등사를 請求할 수 있다.(民訴 § 524의 7)



나. 明示命令 不履行에 對한 刑事 處罰
 財產關係 明示에 關한 法院의 命令을 받고
 도 正當한 事由 없이 明示期日에 出席치 않거나
 財產目錄을 提出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로
 財產目錄을 提出하는 債務者에 對하여는 3年
 以下의 징역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
 하도록 하고 (民訴 § 524의 8, 新說 '90. 1.
 13) 있는데 이는 同制度의 實効性을 確保하고
 이 制度를 定着시킴으로써 故意의 債務辨濟
 忌避弊習을 根絕하고 나아가 社會의 信用秩序
 를 바르게 維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債務不履行者 名簿登載制度

이는 債務者가 金錢의 支給을 命한 判決 또는 支給命令이 確定되거나, 民訴法 第 206條의 調書, 또는 民事調停調書 作成后 6月內에 債務를 履行치 아니한 때 또는 法院의 明示命令을 받고도 이를 行하지 아니한 때 等의 경우에 申請權者的 申請을 받아 法院이 關聯 債務者를 債務不履行者名簿에 登載하도록 決定하고 그 決定에 依하여 債務不履行者名簿를 法院 및 債務者の 本籍地(法人인 경우, 主事務所 所在地)의 市, 區, 邑, 面에 備置하도록 하는 制度로서 申請權者は 金錢支給을 命한 確定判決, 確定된 支給命令, 和解, 認諾, 民事調停調書等 債務名義를 가진자에 局限(民訴 § 524의 9 ①)하며 다만 執行文의 必要 如否에 關하여 大法院例規('91. 10. 5)는 債權者에게 執行文을 要求하지 않도록 明文化하여 本制度의 취지와 實効性을 한층 더 높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듈다.

V. 動產에 對한 強制執行

動產에 對한 強制執行은 먼저 目的物을 押留하여 이를 換價한 後 取得한 金錢을 債權者에게 交付, 即 滿足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目的物 自體가 金錢이면 換價할 必要가 없음은勿論이고 또 換價方法 自體가 債權滿足을 주는 경우, (例컨데, 轉付命令)에는 金錢給付

가 생략된다. 따라서 動產에 對한 強制執行은 目的財產의 種類에 따라 有體動產에 對한 執行(物件의 押留)과 債權 其他の 財產權에 對한 執行(權利의 押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有體動產에 對한 強制執行

有體動產의 執行節次는 執行目的物의 押留, 換價의 단계를 거쳐서 얻은 金錢을 債權者 또는 第3者에게 넘겨주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換價는 원칙적으로 公競賣에 依해 執達官이 押留后 바로 競賣期日을 指定(押留后 7日)하는데 다만 押留物保金이 어렵거나 時日의 經過로 그 物件의 價額이 현저히 減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例外로 하고 있다.(民訴 § 538)

그리고 民訴法 532條의 1~15項에 열거된 押留禁止物과 特別法에서 押留를 禁止하는 有體動產이 있으므로 實務的으로 이러한 点에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나. 證券에 對한 強制執行

有價證券으로 化體된 財產權, 即 有價證券上の 權利는 그 權利의 行使處分에 證券의 交付를 要하므로 執行法上 有體動產에 對한 強制執行의 規程이 適用된다. 각 證券別로 執行節次를 알아보면 어음·手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貨物相換證, 倉庫證券, 船荷證券, 社債券, 國債券, 株券 等도 여기에 包含되며 特히 우리나라 證券去來法(第 2條 1項)은 國債證券, 株券, 社債券 等과 같은 所謂 資本證券, 即 그 表彰하는 權利에 基하여 繼續적으로 利益의 配當 또는 利子의 支給을 받을 수 있는 投資의 對象이 되는 證券만을 有價證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有價證券에 對한 押留는 執達官이 債權者 또는 第3者側에 있는 有價證券을 占有取得 하기만 하면 된다(民訴 § 527, 528)

다. 債權 其他 財產權에 對한 強制執行

強制執行法은 債權 其他의 財產權도 動產의 一種으로 取扱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財產權은 法律上 또는 그 性質上 양도성이 있어야 하고 獨立된 財產的 價值가 있는 것으로서 金錢의 評價가 可能한 것이어야 한다.

1) 債權

債權은 他人에 對하여 어떤 行爲 또는 不行爲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로서 그 目的內容에 따라 金錢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金錢債權과 其他의 物件 또는 일의 紿付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으로 區分된다. 먼저 金錢의 紿付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임금채권, 外上賣買代金債權, 各種具體的인 金錢請求權
- ② 貸料, 紿料, 奉給等의 債權은 貸借權, 고용계약, 就任等에 따라 成立하는 것이므로 一定期間이 지나야 押留의 對象이 된다.
- ③ 會社, 組合에 對한 利益配當請求權, 殘餘財產分配權 等
- ④ 身元保證金, 供托金, 預貯金의 반환 또는 還拂請求權
- ⑤ 貸借權은 人的信用에 基한 것인 点에서 양도성이 없으나 貸貸人の 承諾이 있으면 可能하다.

2) 物件의 紿付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物件은 有體動產이든 不動產이든 어느 경우 이건 간에 그 執行의 對象은 物權自體가 아닌 그 紿付를 目的으로 하는 어디 까지나 債權인 것이므로 그 債權을 押留하고 紿付目的物을 引渡 또는 紿付받은 후에 이를 換價하여야 한다. 따라서 有體物의 引渡請求權 및 그 紿付請求權은 物權의이거나 債權의이거나를 不問하고 執行對象의 債權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其他의 財產權

여기서 其他의 財產權이란 電話加入權, 有體動產의 共有持分, 船舶의 持分, 不動產의 還買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著作權 等을 말하며 그 밖에 類似한 것으로 取消權, 契約解除權은 形成權으로서 그 自體 獨立한 財

產權이 아니므로 押留의 對象이 되지 않으나, 債務者代位로써 權利를 行使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財產權에 對하여는 押留가 可能하며, 또 質權, 抵當權과 같은 担保權은 主된 債權에 從屬되는 것이므로 被擔保債權과 함께 하여야만 押留의 對象이 될 수 있으며 商標權, 商號權도 그 營業과 같이 하여야만 护留의 目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VI. 債務者의 第3者에 對한 金錢債權

債務者가 第3者에 對하여 가지는 金錢債權(預金, 貸金, 賣買代金 等)에 對한 強制執行은 관할법원의 护留命令에 依해 執行하여 債權의 护留命令申請은 移付命令(推尋命令과 轉付命令)과 併合해서 할 수도 있고 또 單獨으로 申請할 수도 있다. 护留命令申請은 債務者の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當該地方法院이 啓는 때에는 第3債務者の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에 申請한다. 執行法院은 护留命令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되면 債務者나 第3債務를 審問치 않고 护留命令을 發하고 職權으로 債務者와 第3債務者에게 그 内容을 送達하는데, 그 内容은 債權者の 請求權과 被 护留債權을 表示하고 第3債務者에 對하여 債務者에 對한 支給을 禁하는 支給停止命令을 하는 한편 債務者에 對하여는 債權의 處分과 領收를 禁하도록 命하는 것이다(民訴 § 561 ①)

그러나 이러한 护留만으로는 护留債權者가 护留된 金錢債權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는 地位가 아니므로 辨濟를 받기 위하여는 該當 金錢債權을 換價하여야 하는데 그 節次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느 쪽을 指하느냐는 債權者の 任意이다.

가. 推尋命令

押留債權者가 代位의 節次를 거치지 않고 債務者에 갈음하여 护留債權의 目的인 紿付(給與)를 第3債務者에게 請求하여 自己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權限(推尋權)을 執行法院으

로 부터 부여받는 것을 推尋命令이라 하는데 債權者는 이에 따라 별도의 主張이나 證明 없이 直接 추심하게 된다. 추심명령은 金錢債權의一般的換價方法으로서 券面額 있는 債權에 關하여도 可能하나 條件附 또는 期限附이거나 反對給付에 걸리는 等의 理由로 推尋이 困難한 경우에는 特別換價方法을 取할 수도 있다. 實際로 推尋命令申請은 債務者가 第3債務者에 對하여 갖는 繼續的 收入인 地代, 家賃(月貲), 株式配當, 債給, 其他 職務上의 固定收入等에 널리 利用되고 있다.

나. 轉付命令

轉付命令이란 押留한 金錢債權을 券面額으로 執行債權의 辨濟에 갈음하여 押留債權者에게 移轉토록 하는 執行法院의 移付命令을 말한다. 이는 債務者가 갖는 債權을 執行債權者가 押留한 경우에 그 目的債權의 券面額을 券面대로 價值가 있는 것으로 보아 執行債權者에게 移轉함으로써 債權의 評價, 換價, 支給, 受領 等의 번거로운 절차를 省略하는 매우 간편한 決濟手段으로서 推尋命令보다 利用率이 높은 實情이다.

다. 特別한 換價方法

押留한 債權이 條件附이거나 期限附인 때 또는 反對債權에 걸려 있을 때, 또는 第3債務者의 破產이나 無資力 等의 理由로 推尋이 어려운 때에는 法院은 債權者の 申請을 받아 추심명령 이외의 다른 換價方法을 命할 수 있는데 다만 轉付命令이 이미 發效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換價命令은 債權者, 債務者 및 第3債務者에게 送達되어야 效力이 發生한다.

七. 不動產에 對한 強制執行

I. 意義

不動產에 對한 強制執行은 金錢債權의 辨濟를 위해 債務者所有 不動產에 對한 執行으로

서 不動產의 引渡請求나 紿付(給與)請求에 對한 執行과는 다르다. 不動產에 對한 執行은 그 方法에 따라 強制競賣와 強制管理로 區分하는데 債權者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두가지 方法을 併行할 수도 있다.

強制競賣는 競落에 依하여 債務者가 所有權을 喪失하나 競落되기 前까지의 使用收益權은 잊지 않는다. 反對로 強制管理는 債務者가 目的不動產에 對한 所有權은 갖고 있되 그 使用收益權은 行使할 수 없다. 強制管理는 債務者의 所有不動產에 限하지 않고 債務者의 使用受益權인 地上權이나 賃借權 等에 對하여도 할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不動產의 種類와 用途가 多樣해 짐에 따라 이에 對한 利用도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II. 強制競賣

有體動產의 경우는 押留, 換價는 執達官이 擔當하나, 그 賣得金의 配當은 執行法院이 擔當하고, 不動產의 強制競賣에 있어서는 目的物의 押留, 換價, 配當 等의 節次를 모두 執行法院이 擔當한다. 따라서 強制競賣는 債權者の 申請에 依해 開始되며 強制競賣節次의 開始와 함께 目的不動產에 對한 押留效力이 생기며 이러한 押留效力은 債權者에게 送達한 때에 생기며 不動產의 從物에도 미친다.

III. 任意競賣(抵當權의 實行)

任意競賣란 擔保權의 實行을 위해 行해지는 것으로서 債務名義에 依據한 強制競賣에 對應한 개념으로 任意競賣에는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및 物權의 傳賈權者 等에 依한 競賣와 其他 民商法의 規定에 依한 價格保存 또는 整理 等의 目的으로 行하여 지는 이른바 形式的競賣의 두가지가 있으나 주로 前者에 屬하는 것을 任意競賣라고 하며 다만 擔保權中에서도 抵當權이 大部分을 占하므로 흔히 抵當權의 實行을 任意競賣의 全部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任意競賣나 強制競賣가 모두 金錢給付請求權의 滿足을 얻기 위해 그 責任을 強

制의으로 實現하는 節次, 卽 強制執行인 点에
서는 같으나 任意競賣는 債務者の 特定財產을
執行의 對象으로 하는데 反하여 強制競賣는
債務者の 一般財產을 對象으로 하는 点이 다
르다.

또한 강제경매는 債務名義가 있어야 하나
任意競賣는 有効한 擔保權 卽 被擔保債權이
있어야 하고 그 實行을 위하여 被擔保債權
의 履行이 지체되어야 하므로 辨濟期日 未到
來의 競賣申請은 却下된다.

八. 어음手票의 不渡時 對應策

I. 残高不足에 依한 경우

當該 어음手票가 預金殘高不足으로 不渡發
生하여 代金決済可能性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不渡發生의 장본인을 만나는 것이 急先務이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음 發行人 및 背書
人을 相對로 어음手票金回收에 必要한 法的
措置를 위해 財產調査와 함께 發見된 動產,
不動產, 有體動產 等에 假押留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不渡金額이 5백만원 以下の 少額인
경우는 支給命令이나 少額審判制度를 活用하
는 것이 有利하며 또 다른 債權者가 假押留,
訴訟着手 等으로 配當參加하게 되면 債權額比
率에 따라 配當을 받게 되어 回收額이 減少
할 우려가 있으므로 他債權者 모르게 해야 함
은 너무도 當然하다.

II. 無去來로 因한 不渡

어음인 경우 所持人은 어음發行人에 對하여

詐欺罪로 告訴 또는 告發하는 한편 어음金에
對한 請求 또는 遷求節次를 取하고 手票인 경
우는 不正手票團束法違反과 詐欺罪와의 競合
이 成立되므로 이 点에 着眼하여 法的措置를
取하는 한편 手票發行人에 對한 遷求權行使
도 請求해야 한다.

III. 紛失, 盜難, 被詐取 等의 경우

이 경우는 어음 · 手票金額이 發行人의 去來
銀行에 「事故申告 預托金」으로 別段 豫金計定
에 入金되어야 하므로 이에 對한 假押留措置
가 時急하다. 從來는 去來銀行이 同預托金에
對하여 銀行이 먼저 相計權을 行使하였으나
얼마전 大法院判例는 이를 相計에 關한 權利
남용으로 보아 無效로 判示한 바 있다.

IV. 偽造 또는 變造에 依한 경우

어음 · 手票의 위조란 權限 있는 者가 他人名
義의 記名捺印을 行使하여 外觀上 正當한 것
으로 보이게 하는 어음(手票) 行爲이고 變造
란 어음(手票)金額을 고치거나 滿期日, 支給
人, 受取人 等을 바꾸어 어음手票의 主要內容
(必要的記載事項)을 變改하는 行爲로서 刑法
은 이에 關하여 10年以下の 징역에 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告訴 또는 告發조치를 取
하고 手票의 경우에는 不正手票團束法 第5條
에도 해당되므로 手票所持人(不渡맞은 者)은
더욱 有利한 立場에 있다 하겠다.